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황윤희*

I. 서론

기산일

II. 계속적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IV. 연금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III. 일시금보험급여의 소멸시효

V. 결론

I. 서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제36조 제1항에서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장의2에서는 진폐근로자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발생 빈도와 지급방법에 따라 계속적 보험급여, 일시금보험급여와 연금보험급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자: 2013. 3. 30, 심사일자: 2013. 4. 10, 게재확정일자: 2013. 4. 13

* 신한노무법인 대표노무사/법학박사

첫째, 계속적 보험급여는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이 일회적이 아니라 계속하여 이어지다가 보상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그리고 상병보상연금은 명칭은 연금 형태이지만 폐질상태에 있는 재해자에게 휴업급여대신 지급하므로 계속적 보험급여에 해당한다.

둘째, 일시금보험급여는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일회적으로 발생하고 보험급여도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보상관계가 종료된다. 일시금보험급여의 종류는 장의비가 대표적일 것이며, 장해등급이 경미한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연금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다.

셋째, 연금보험급여는 보험급여 지급사유는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보험급여를 법령에 의하여 연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여기에는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해당된다. 연금보험급여는 수급권자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법령에 의하여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이와 같은 보험급여는 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 그러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가 언제든지 청구하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되며,¹⁾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권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1) 1963. 11. 05. 제정 산재보험법[법률 제1438호]의 보험급여 소멸시효는 상법(제662조)상의 일반보험과 같이 2년(제30조 제1항)으로 정해졌으나, 1976. 12. 22. 개정법[법률 제2607호]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1974. 12. 24.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708호]의 재해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것에 맞춘 것이다.(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004, 257쪽.

않으면 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되며, 그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여도 지급하지 않는다.²⁾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³⁾ 소멸시효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실상태가 장기간 방치된 데에 따른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데 그 취지가 있다.⁴⁾

산재보험법의 모태가 된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애의 원인으로 된 질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그 장애정도가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 일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된다.⁵⁾⁶⁾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대부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소멸시효 기산일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런데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는 각 보험급여마다 지급사유가 다르고 법령에 의하여 지급시기도 일률적이지 않다. 이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업무

2)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중앙경제, 2008, 553쪽.

3) 김형배, 『민법강의』, 신조사, 2003, 267쪽.

4)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 직무교육) 산재보험보상』, 2011, 250쪽; 최은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과 소멸시효”, 『재판자료(제108집)』, 법원도서관, 2005, 558쪽.

5) 서울고법 1982. 03. 10. 선고 81나3497 제3민사부판결.

6) 한편 서울민사지법 판례(서울민사지법 1992. 04. 21. 선고 90가합39151 제36부 판결)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재해보상 청구권의 시효 기간은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8조에 의한 요양보상 및 같은 법 제79조에 의한 휴업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즉 그 이행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각 요양보상 청구권 및 휴업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 지급채무는 적어도 당해 요양기간 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것이므로 그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도 각 그 이행기인 당해 요양내지 휴업기간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였다.

상 재해발생과 동시에 개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험급여 소멸시효를 일률적으로 재해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면 수급권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II. 계속적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상실된 노동력의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현물급여가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이나,⁷⁾ 시효 진행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이다. 그 이유는 민법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영시부터 진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⁸⁾ 요양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날이 아니라,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⁹⁾¹⁰⁾ 그러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이 계

7) 대법원 2003. 04. 0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김상중, 『민사판례연구(33-2권)』, 박영사, 2011, 143쪽.

8) 김형배, 앞의 책, 278쪽; 김종양·최재식, 『공무원연금제도』, 법우사, 2004, 404쪽.

9)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58쪽;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 직무교육) 산재보험 보상』, 251쪽; 김수복, 앞의 책, 553쪽; 김태수, 『산재 손해배상실무(제2권)』, 진원사, 2010, 270쪽; 이상국, 『산재해해보상보험법』, (주)청암미디어, 2001, 808쪽; 이상국, 『산재보험법(I)』, 진명출판사, 2012, 596쪽; 조보현, 『산재해해보상보험법』, 홍익재, 2000, 425쪽.

10) 민법의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일도 불법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손해도 나날이 발생하면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0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속되고 있으면 그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위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 진행이 중단된다.¹¹⁾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요양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인 요양비를 지급할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¹²⁾

재요양의 경우도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다.¹³⁾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임금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업급여 소멸시효 기산일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¹⁴⁾

휴업급여도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청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¹⁵⁾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 청구권도 재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11)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12)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58쪽.

13)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14)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58쪽;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 직무교육) 산재보험 보상』, 251쪽; 김수복, 앞의 책, 553쪽; 김태수, 앞의 책, 271쪽;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8쪽; 이상국, 『산재보험법(Ⅰ)』, 596쪽; 조보현, 앞의 책, 425쪽.

1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누2033 판결; 서울행법 2004. 09. 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¹⁶⁾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한 경우, 그 평균임금 정정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그 추가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그 때부터 중단되고, 그 평균임금 정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다가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에 따른 심사결정이나 행정소송의 판결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평균임금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평균임금이 정정된 때에 근로자는 그 정정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되는 추가 보험급여 청구권을 새로이 행사할 수 있어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¹⁷⁾

3.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폐질등급 제3급 이상이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을 받지 않았더라면 취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 장기간 폐질상태에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휴업금

16) 최은배, 앞의 논문, 562쪽.

17) 서울행법 2004. 09. 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원고가 2000. 01. 28.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한 응답이 없어 다시 2002. 04. 16.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다면, 그 정정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판결로 다시 정정된 평균임금에 터 잡아 계산되는 추가 보험급여는 2000. 01. 28.에 그 지급청구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때부터 거슬러 계산하여 3년이 넘지 않은 기간인 1997. 02. 03.부터 계산되는 이 사건 휴업급여 등의 소멸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확정된 2003. 03. 15.부터 다시 이 사건 휴업급여 등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원고는 그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2003. 03. 31.에 이 사건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¹⁸⁾

상병보상연금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해서도 폐질상태를 진단 받은 날(폐질상태진단서)의 다음 날부터라는 견해가 있다.¹⁹⁾

이에 반하여 상병보상연금은 매월 지급되므로 소멸시효 기산일은 매월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라는 주장도 있다.²⁰⁾

하급심 판례는 “휴업급여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날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청구권 소멸시효가 매일 진행되고,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은 요양이 개시된 후 당해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폐질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 그 날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진행된다.”²¹⁾고 하였다.

상병보상연금은 폐질등급에 해당하는 재해근로자에게 휴업급여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휴업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마다 매일매일 진행된다면, 상병보상연금 소멸시효 기산일도 매월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4.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에서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간병급여는 요양이 끝난 뒤에도 중증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²²⁾ 간병급여는 중증장애의 정도에 따라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로 구분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18)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령 직무교육 교재』, 2008, 322쪽.

19)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58쪽.

20) 김수복, 앞의 책, 553쪽;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8쪽; 이상국, 『산재보험법(Ⅰ)』, 596쪽; 조보현, 앞의 책, 425쪽.

21) 서울행법 2004. 09. 24. 선고 2003구단6101 판결

22) 김수복, 앞의 책, 484쪽.

간병급여 소멸시효 기산일도 요양급여를 받다가 치유된 이후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²³⁾

5.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 종류는 장애급여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훈련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애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직업재활급여는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기산일도 각 보험급여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일시금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1. 장해보상일시금

1) 장해보상일시금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같은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²³⁾ 김태수, 앞의 책, 271쪽;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 직무교육) 산재보험 보상』, 251쪽.

상태를 말한다.

치료의 종결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문의사에 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므로, 업무상의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근로자라도 임의로 상병이 완치되었음을 이유로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대신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를 청구할 수 없다.²⁴⁾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시점에 바로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종결한 시점에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장해급여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장해급여에 대한 소멸시효는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가 고정된 시점부터 진행된다.²⁵⁾²⁶⁾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 이와 같은 견해에 의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는 장해등급 제14급에서 제8급의 근로자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는 장해등급 제7급에서 제4급의 근로자라도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장해보상일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요양 후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가 고정된 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 제3급 이상의 근로자로서 장해급여 청

24) 대법원 1997. 05. 07, 선고 96누16056 판결

25)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58쪽;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 직무교육) 산재보험 보상』, 251쪽; 김수복, 앞의 책, 553쪽;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8쪽; 이상국, 『산재보험법(I)』, 596쪽; 조보현, 앞의 책, 425쪽; 김의환, “장해연금선급금 과소지급과 소멸시효”, 『대법원 판례해설(제45호)』, 법원도서관, 2004, 105쪽; 최은배, 앞의 논문, 562쪽.

26) 그러나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6조 제10항)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므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의 사례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제51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어도 소멸시효(5년) 이전에 수급권자가 장해연금을 선택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하여, “장해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 해당 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되 장해연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였다.²⁷⁾

2) 직업성 난청

직업성 난청의 치유는 현대 의학으로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어 그 근로자가 유해한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치유시기로 본다. 따라서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²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5 - 가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27) 대법원 1993. 03. 23. 선고 92누12629 판결(이 사건은 공무원연금법의 사건으로, 원고가 1985. 05. 04. 공무원 재해를 당하고, 같은 달 14. 경 좌상완신경총 손상 및 좌상지 완전마비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그로부터 5년이 훨씬 경과한 1991. 10. 02.에 이 사건 장해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장해보상금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장해보상금청구를 장해연금청구로 보아야 한다거나 볼 수 있다는 논지는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로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전제로 하여 장해연금청구권은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다음 달부터 월차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 역시 장해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 해당 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되 장해연금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28) 산재보험법시행규칙 [별표5], 2-가-1)-라);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만 직업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즉 “소음 작업을 벗어난 때”를 소음 작업장으로 규정한 연속음으로 85 [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을 떠났을 때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되었을 때를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① 공단의 지침

공단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서, “유발될 수 있는 장소”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을 의미하며,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란 “작업환경 개선의 결과를 포함하여 소음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기존 작업을 떠나 다른 비소음부서에 근무하거나 퇴직한 경우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한다. 기존 작업장이 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A)]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이었다 할지라도 작업환경 등 개선의 결과, 연속음으로 85데시벨 [dB(A)] 미만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해당되었고, 해당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면 작업환경 등 개선 후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가 치유 시기라 한다.²⁹⁾

② 판례

법원의 판례는 “소음 작업장을 벗어난 때”라고 함은 일률적으로 85dB 미만의 소음 작업장으로 전환배치 되거나 85dB 이상의 작업장을 떠났을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현 작업환경 및 청력손실의 진행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³⁰⁾이라 한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은 반드시 소음정도

²⁹⁾ 2010. 09. 24. 보상팀(근로복지공단)-6344, 질의회시(직업성난청의 장해보상기준 등)

³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961 판결; 서울고법 2003. 07. 24. 2002누

가 85dB 이상인 철구공장 현장에서의 소음 만에 의하여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외에 원고가 철구공장 현장을 떠난 뒤에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소음(60dB 이상)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특히 2000. 08. 10.부터 같은 해 09. 30.까지 8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고속전철 지그작업과 오스트리아화차를 이동하는 작업 및 객차 의장작업을 수행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장해보상금 지급청구일인 2001. 05. 02.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전에 소음 작업장을 떠나 소음성 난청의 장애가 고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³¹⁾

③ 사건

사건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소음성 난청이 반드시 작업장 소음 측정치가 85dB 이하가 되면 난청이 유발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난청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비소음 부서로 전환하였을 때”를 “소음 작업을 벗어난 때”로 보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며, 소음성 난청의 장해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은 실질적으로 소음 부서를 떠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이다.

2. 유족보상일시금

1) 유족보상일시금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따라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지급이 원칙이며, 연금

19864 판결.

31) 서울고법 2003. 07. 24. 2002누19864 판결.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유족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대부분의 문헌은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³²⁾ 유족급여가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소멸시효 기산일을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이의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2) 사망의 추정

산재보험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航行)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생사가 3월간 밝혀지지 아니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같은 사망의 추정의 경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① 사고발생일설

사고발생일설은 보험급여 청구권은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망의 추정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급여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청구할 수 있다고 보

³²⁾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59쪽;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 직무교육) 산재보험보상』, 251쪽; 김수복, 앞의 책, 553쪽; 김태수, 앞의 책, 272쪽;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8쪽; 이상국, 『산재보험법(1)』, 596쪽; 권덕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근로자가 사망한 때로 볼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한 때로 볼 것인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제89호』, 법원도서관, 2011, 966쪽.

기 때문이다.

② 사망추정일설

사망추정일설은 그 사고가 발생하거나 생사가 불명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라는 것이다.³³⁾ 보험급여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의 추정은 그 사고발생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이 지나야만 사망의 추정이 확정되며, 그 이전에는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인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추정의 경우 사실상 소멸시효가 3년이 아니라 2년 9개월이 되기 때문이다.

③ 사건

사건으로는 사망추정일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未到來)나 조건불성취(條件不成就)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³⁴⁾ 사망의 추정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이 지나야만 사망의 추정 조건이 성취되고, 그 이전에는 조건불성취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3. 장의비

33) 김태수, 앞의 책, 272쪽;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116쪽.

34) 대법원 2007. 08. 23. 선고 2007다28024,28031 판결; 대법원 2007. 0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대법원 2006. 0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대법원 2004. 0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산재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되, 장제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의비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서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이 있다.³⁵⁾

이에 반하여 장의비는 수급권자가 유족에 한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험급여이므로 청구권 자체가 장제의 실행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장제를 실행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는 설도 있다.³⁶⁾

이와 같이 장의비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이견은 장의비 규정의 연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되는데, 장의비를 청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제정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 제5호(장제급여)는 “보험금은 평균임금의 9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장제급여를 포함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서 제80조와 제82조에서 제84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당시 시행되던 1961. 12. 04.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791호] 제83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때는 장의비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사망이 장의비 지급사유이자 지급시기이기 때문이다.

³⁵⁾ 김수복, 앞의 책, 553쪽; 김태수, 앞의 책, 275쪽; 이상국, 『산재보험법(1)』, 596쪽; 조보현, 앞의 책, 425쪽, 주19); 권덕진, 앞의 논문, 966쪽.

³⁶⁾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59쪽;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 직무교육) 산재보험 보상』, 2011, 251쪽; 김태수, 앞의 책, 272쪽.

그러나 장의비 규정은 1999. 12. 31. 개정 산재보험법[법률 제6100호] 제45조 제1항으로 개정되어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2항은, 장의비 등의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때부터는 장제를 실행한 날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의비는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어도 장의비는 장제실행이 있어야만 지급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장제실행 이전에는 소멸시효의 법률상의 장애사유인 조건불성취에 해당된다.

장의비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도 지급된다. 따라서 장제를 지내지 않은 경우에는 장의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³⁷⁾

4. 기타의 급여

1) 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 특별급여나 장해특별급여를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특별급여 소멸시효 기산일도 유족특별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날의 다음 날³⁸⁾, 장해특별급여는 근로자가 치유된 날의 다음 날이라는 견

37)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2쪽; 황운희,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지급보험금의 상속 법리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114쪽.

38)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59쪽; 김태수, 앞의 책, 275쪽.

해가 있다.³⁹⁾

그러나 특별급여는 현행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아니므로⁴⁰⁾, 공단이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 특별급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손해배상 편의제공을 위한 민사대불제도이다. 특별급여는 수급권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반드시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수급권자와 사업주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청구할 수도 없다.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사업주와의 합의가 없음에도 업무상재해발생일 즉, 재해근로자 사망일이나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다고 특별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청구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날의 다음 날로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인 장해급여나 유족급여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특별급여의 소멸시효 기간이 더 길어진다. 이 또한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특별급여는 원래의 보험급여 즉, 장해급여나 유족급여의 소멸시효 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수급권자와 사업주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공단이 지급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미지급보험급여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

³⁹⁾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58쪽; 이상국, 『산재보험법(1)』, 596쪽.

⁴⁰⁾ 1970. 12. 31, 일부 개정[법률 제2271호]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유족특별급여를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하였으나, 1982. 12. 31, 일부 개정[법률 제3631호] 제9조 제1항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에서 유족특별급여를 삭제하였고, 제10조에서 장해특별급여 제도도 도입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특별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에서 제외되고 있다.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를 미지급보험급여라 한다.

미지급보험급여도 보험급여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수급권은 이미 발생하였으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그 사망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보험급여다.

미지급보험급여는 원래의 수급권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

미지급보험급여는 새로운 보험급여가 아니라 이미 발생한 보험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민법의 상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⁴¹⁾

IV. 연금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1. 연금보험급여의 종류

산재보험 연금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유족연금이 있다.⁴²⁾

장해보상연금은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등급 제3급 이상의 근로자가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 이외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을 뿐이다.

41) 황운희, 앞의 논문, 78쪽.

42) 상병보상연금은 여기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유족급여도 유족보상연금지급이 원칙이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된다.

2010. 05. 20. 개정 산재보험법[법률 제10305호]은 진폐에 대해서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게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한다.⁴³⁾

2. 연금보험급여의 지급시기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연금은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달의 25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3. 연금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

1) 견해의 다름

① 재해발생일설

연금보험급여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일시금보험급여와 구분하지 않고 있다. 연금보험급여도 업무상 재해발생일 즉, 장해보상연금은 부상 또는 상병이 치유된 날⁴⁴⁾·유족급여는 근로자가

⁴³⁾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 직무교육) 산재보험 보상』, 346쪽.

⁴⁴⁾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58쪽; 근로복지공단, 『

사망한 날⁴⁵⁾·진폐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진단된 날·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날(이하에서는 이를 “재해발생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못하고 오로지 연금으로만 지급 받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산일을 일시금보험급여와 같이 업무상 재해발생일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리고 만일 재해발생일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한다면, 후술하게 될 연금차액 일시금의 경우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사망하거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고 다른 연금수급권자가 없을 경우에 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효중단의 법리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② 연금지급일설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재해발생일의 다음 날이다.

그런데 연금보험급여는 2000. 07. 01. 이전에는 매년 이를 4등분하여 02월, 05월, 08월, 11월에 각각 그 전 월분까지를 지급하였고, 2000. 07. 01. 이후에는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했다. 이와 같은 연금보험급여 청구권은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구체적인 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2000. 07. 01. 이전에는 매년 02월, 05월, 08월, 11월의 각 지급일이, 2000. 07. 01. 이후에는 매월 10일이고⁴⁶⁾, 2010.

(2011 사이버 직무교육) 산재보험 보상』, 251쪽; 김수복, 앞의 책, 553쪽;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8쪽; 이상국, 『산재보험법(Ⅰ)』, 596쪽; 조보현, 앞의 책, 425쪽; 김의환, “장해연금선급금 과소지급과 소멸시효”, 『대법원 판례해설(제 45호)』, 법원도서관, 2004, 105쪽; 최은배, 앞의 논문, 562쪽.

45)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59쪽;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 직무교육) 산재보험보상』, 251쪽; 김수복, 앞의 책, 553쪽; 김태수, 앞의 책, 272쪽;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8쪽; 이상국, 『산재보험법(Ⅰ)』, 596쪽; 권덕진, 앞의 논문, 966쪽.

46) 김의환, 앞의 논문, 105쪽.

05. 20. 개정 산재보험법[법률 제10305호] 이후부터는 매월 25일이다.

연금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기본적 청구권은 연금청구권이고 연금선급금 청구권은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일종의 은혜적인 부가적 권리(Bonus)라 할 것이므로, 선급금청구권을 행사하여 선급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그 차액에 대한 기본적인 연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⁴⁷⁾

③ 절충설

연금보험급여 청구권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한 이후에 지급되지 못한 연금보험급여가 있다면 그 수급권은 매월마다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전에 연금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연금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면 매월마다 지급되는 연금보험급여 청구권은 매월마다 소멸시효가 기산되어 청구일로부터 3년이 넘는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3년 이내의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공단은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의 판례는 “장해연금의 지급이 개시된 후 해당 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모르되 장해연금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⁴⁸⁾고 하여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례

대법원 판례는 장해보상연금 4년 치를 선급금으로 지급받은 후, 평균임금 차액에 대한 미지급 장해보상연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고가 4년 치의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을 수령한 날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평균

47) 김의환, 앞의 논문, 106-107쪽.

48) 대법원 1993. 03. 23. 선고 92누12629 판결

임금 결정에 관한 사무착오로 말미암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연금을 실제로 선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이상 그 차액 부분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령(2000. 0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은, 연금보험급여는 매년 이를 4등분하여 02월, 05월, 08월, 11월에 각각 그 전월 분까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은 3개월마다 계속 발생하여 각 이행기에 도달하는 확정기한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그 소멸시효 기산일은 장해연금 4년분 선급금을 지급한 1996. 03. 27.이 아니라, 1996. 05월 이후 2000. 03. 31.까지 매 3개월마다 도래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미지급 장해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2000. 06. 15.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3년 이내의 부분에 대한 장해연금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 하였다.⁴⁹⁾ 이 판례는 연금보험급여 청구권은 행사되었지만 지급되지 못한 연금보험급여의 차액에 대한 판례라 연금보험급여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급심 판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제1급 장애를 가진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1979. 09. 27. 재해 이후 요양하다가 1981. 06. 02. 치료를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가, 2003. 11. 26. 하반신마비로 증상이 악화되어 2004. 03. 01.부터 2010. 03. 31.까지 폐질등급 제1급 8호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다가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하여 제1급 8호로 판정받았으나, 재해자가 치료 중단 이래 2003. 11. 26. 재요양결정을 받을 때까지 12년여에 걸쳐 재요양을 신청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보면 사실상 치료중단 시점인 1981. 06. 02.경 장애상태가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장해급여 청구권은 3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⁵⁰⁾고 하여 재해발생일설을 취한다.

⁴⁹⁾ 대법원 2003. 0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⁵⁰⁾ 대전지법 2011. 05. 12. 선고 2010구단1427 판결.

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수급권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급여지급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 그러나 이를 노령·장애 및 유족연금수급권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금수급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한 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연금지급분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⁵¹⁾

연금급여수급권(장애일시보상금 포함)은 기본권과 지분권으로 구분되어 기본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5년)가 경과한 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연금지급분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한다.⁵²⁾ 매회 마다 지급되는 연금지급분은 연금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기 때문이다.⁵³⁾

4) 외국의 사례

일본의 후생연금보험(厚生年金保險)에 의하면, “‘연금이라는 형태의 보험급부를 받을 권리(기본권)’는 사회보험청장관(社會保險廳長官) 또는 도도부현지사(都道府縣知事)가 재정(裁定)을 청구하지 않은 채로 5년이 지나면 기본권이 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은 연금을 지불받기 위한 수속상의 요청으로써 행해지는 것으로, 그 본질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기본권의 확인처분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즉, 기본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회피하기 위한 행정사무처리가 행하여져, 소멸시효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각 지불기간에 생기는 지분권(支分權)만이 되도록 배려되어 있어서,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재정청구라 하더라도, 현실

⁵¹⁾ 인경석, 『국민연금법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456쪽.

⁵²⁾ 인경석, 앞의 책, 457쪽.

⁵³⁾ 인경석, 앞의 책, 455쪽.

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은 재정청구의 5년 전의 지불기간
묵만이 해당되는 것 같은 취급이 행하여지는 것이다.”⁵⁴⁾

독일 사회법장의 일반규정인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의 규정에 의하
면, 「사회적 여러 급부의 청구권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한 때 즉시 성립한
다.」(SGB§40 Abs.1)이며, 「그 성립한 역년(歷年)의 경과 후 4년으로 시효
가 된다.」, 「시효는 사회적 여러 급부를 문서로 신청하는 것…에 의해 중
단된다.」(§45 Abs.2). “연금급부가 시효에 걸리는 것은 각각의 시점에서 생
기는 지분권이며, 기본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⁵⁵⁾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라이히보험법(Reichsversicherungsordnung)에서는,
“산재보험의 급부는 신청에 의하지 않고, 직권에 의해 신속하게 확인해야
만 하는 것(RV0§1545)이라고 정해져 있었다. 재해보상이 직권에 의해 확
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권은 재해 후 2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청구권의 신고가 그것보다 늦은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달의 첫날부터 급부가 행하
여졌다. 또「재해의 결과,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직권에 의한 확
인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유족보상 청구권은 재해자 사망 후 2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1548)」라고 정해져 있었다. 물론, 이것들은 시
효를 정한 것이 아니라, 지분권 신고의 제척기간을 정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재해 후 2년이 지난 뒤의 신고 사례에 대해서 급부를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으나, 신고한 이후부터는 급부를 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
다.”⁵⁶⁾

5) 사건

일시급보험급여가 아니고 수급권자의 선택권도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

⁵⁴⁾ 田中清定, 『勞働法の課題』, 勞働法令協會, 2000, 344頁.

⁵⁵⁾ AYE · BLEY · GOBELSMANN · GURGEL · MÜLLER · SCHROETER; SGB
Gesamtkommentar Bd1.S.418(田中清定, 前掲書, 351頁에서 재인용).

⁵⁶⁾ 田中清定, 前掲書, 351-352頁.

하여 지급되는 연금보험급여는 매월 지급되므로, 매월마다 계속하여 각 이행기에 도달하는 확정기한 있는 채권이다.⁵⁷⁾ 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기한도래 이전에는 청구할 수도 없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⁵⁸⁾ 연금보험급여의 경우 지급일이 매월 25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일의 다음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본다면,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금보험급여는 법률상의 장애사유인 ‘기간미도래’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진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구체적으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연금보험급여는 각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연금보험급여를 청구하더라도 청구일로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할 수 없지만 3년 이내의 연금은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연금보험급여 시효에 걸리는 것은 각각의 시점에서 생기는 개개의 지분권이며, 기본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⁵⁹⁾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장해보상연금은 물론 유족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⁶⁰⁾·진폐유족연금⁶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

57) 대법원 2003. 03. 28. 선고 2002두11028 판결.

58)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0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59) AYE · BLEY · GOBELSMANN · GURGEL · MÜLLER · SCHROETER: SGB Gesamtkommentar Bd1. S. 418(田中清定, 前掲書, 351頁에서 재인용).

60) 진폐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현대 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볼 때, 진폐근로자가 병원의 검진 결과 진폐 병형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받고 노동부에 요양신청을 한 후, 노동부로부터 진폐요양급여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통지받은 때가 ‘손해를 안 날’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8780 판결).

이다.

만일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연금보험급여에 일시금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재해발생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수급권자를 장기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보험급여액도 일시금에 미치지 못함으로 두터운 보호의 취지가 퇴색된다. 즉, 유족보상일시금은 사망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지만,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의 최고액이 사망한 근로자의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의 365일분)의 100분의 67이며, 이를 3년 치로 환산하면 평균임금의 733.65일에 불과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의 평균임금 1,300일분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장해보상연금도 장해등급 제1급에서 제3급의 경우에도 3년 치를 환산하면 일시금의 약 66% 수준에 불과하다.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지급하는 25일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될 것이며, 이는 장해등급 재판정후 장해등급이 악화되어 변경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하여 할 것이다.

만일 재요양 후나 장해등급 재판정 후 장해등급이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이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84조의 부당이득금이 될 것이다. 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때의 소멸시효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공단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⁶¹⁾

61) 2010. 05. 20. 개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04호]의 진폐유족위로금(법 제24조에서는 진폐유족연금이 삭제되고 진폐위로금으로 통합되었다.)을 받을 권리는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유족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거나 확정된 때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진행된다.(산보 68307-514, 1998. 08. 14.).

4. 연금차액 일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연금차액일시금은 수급권자가 연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다가 연금수급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연금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미 지급받은 연금의 일수가 일시금의 평균임금 일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시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를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이라 한다. 장해보상연금 소멸사유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소멸사유 기산일은 치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위와 같은 장해보상연금의 수급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이 될 것이다. 즉,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날의 다음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

62) 대법원 2009. 0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차액일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근로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일 재해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한다면 연금보상급여 수급권자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사망한다면 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효중단의 법리를 도입하여 한다. 따라서 연금차액일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재해발생일 즉, 장해보상연금의 경우 부상 또는 상병이 치유된 날·유족보상연금의 경우 재해근로자가 사망한 날을 연금차액 일시금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V. 결론

산재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 재해보상 의무를 사회보험화 한 것으로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관장하고 있다.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급여는 국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 그렇다고 하여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을 비껴갈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소멸시효 기산일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제외 하면 대부분 업무상 재해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사용자의 재해보상의무가 발생되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러나 산재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보호목적에 따라 보험급여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급권자를 장기간 보호하기 위하여 연금제도를 시행한다. 이러한 산재보험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과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급시기와 수급

권자의 보호목적에 따른 적절한 보호가 요청된다.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산재보험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을 두텁게 보호함이 사회보험법의 책무라 하겠다. 특히 연금보험급여에 있어서 시효에 걸리는 것은 각각의 시점에서 생기는 개개의 지분권이며, 기본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산재보험급여, 청구권, 수급권자, 소멸시효, 기산일

참고문헌

- 권덕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근로자가 사망한 때로 볼 것인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지급 결정을 한 때로 볼 것인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판례해설 제89호』, 법원도서관, 2011.
- 근로복지공단, 『(사이버 직무교육교재) 산재보험보상』, 2004.
- 근로복지공단, 『(2011 사이버 직무교육) 산재보험보상』, 2011.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령 직무교육 교재』, 2008.
- 김상중, 『민사판례연구(33-2권)』, 박영사, 2011.
-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중앙경제, 2008.
- 김의환, “장해연금선급금 과소지급과 소멸시효”, 『대법원 판례해설(제45호)』, 법원도서관, 2004.
- 김중양·최재식, 『공무원연금제도』, 법우사, 2004.
- 김태수, 『산재 손해배상실무(제2권)』, 진원사, 2010.
- 김형배, 『민법강의』, 신조사, 2003.
- 이상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청암미디어, 2001.
- 이상국, 『산재보험법(Ⅰ)』, 진명출판사, 2012.
- 인경석, 『국민연금법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 조보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홍익재, 2000.
- 최은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청구권과 소멸시효”, 『재판자료(제108집)』, 법원도서관, 2005.
- 황운희,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지급보험급여의 상속 법리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田中清定, 『労働法の課題』, 労働法令協會, 2000.

<Abstract>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Wang, Woon-hee*

The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which is the social insurance as an obligation of business owners in the Labor Standards Act,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for protecting the rights for living of worker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s and their bereaved. The social insurance benefits that i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is required even special protection than the regular social insurances. Yet, the claims of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s is not unlimitedly guaranteed without the period limitation. The claims of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 too, is not able to avoid the legal maxim: the laws aid the vigilant, not the negligent.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accident compensation in the Labor Standards Act except the treatment benefit and the temporary incapacity benefit begins from the next day for taking effect of employers' obligation of accident compensation. Nevertheless, the occup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has various kinds of insurance benefit depends on the purpose of protecting beneficiaries, and it enforce the pension system for protecting beneficiaries for long periods. Likewise,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accident compensation would not be applied uniformly like accident compensation in the Labor Standards Act, but it needs to be preserved by the protection purpose of

* C. P. L. A. / ph. D.

beneficiaries and the date of payment. Also,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tends the obligation of the social insurance act for protecting workers injured by industrial accidents and their bereaved upon the aims and ends of the law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Key words: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Right of claim, Beneficiaries, Extinctive prescription, The initial date in reckoning